수원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정원 외 특별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수원여자대학교 SUWON WOMEN'S UNIVERSITY

신입생 등록 및 복수지원 주의사항

입학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처리하오니, 입학원서 접수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포함)】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적용 예외 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학교로서 육·해·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한국폴리텍대학,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해당됨

□ 적용범위 :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문서등록을 등록으로 처리함)
- 수시모집 문서등록자는 추후 안내되는 기간에 최종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최종등록이 완료됨 (기간 내 최종등록금 미납부시 합격취소)
- 재학 중이라도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및 입학이 무효 처리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I. 전형일정

구분	정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4.01.03.(수) 09:00 ~ 01.15.(월) 21:00 까지	▸ 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중 지원 서류를 지참.본교 입시홍보팀을 방문하여 지원 자격 기초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자만 인터넷원서접수를 위한 Code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기초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기초심사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추후 통지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4.01.03.(수) ~ 01.17.(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접수사이트에서 제출서류 발송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 부착 후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 ▸ 증빙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서류미제출로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함
면접고사 일정	2024.01.24.(수) ~ 01.26.(금)	▸ 면접고사 미응시자(결시자)는 "불합격"처리 ▸ 면접고사일은 최종 지원자 수에 따라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음
예약일정	2024.01.18.(목) 09:00 ~ 17:00까지	▸ 면접/실기 대상자는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시험시간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대학에서 시험시간을 임의 배정함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면접, 실기 운영 조치가 필요할 시 추후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024.02.02.(금) 14:00 예정	▸ 본교입시홈페이지(http://entr.swwu.ac.kr)를 통해 발표 ▸ 개별통보 없음(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4.02.07.(수) ~ 02.13.(화)	▸ 본교 홈페이지 ▸ 합격증과 예치금 납부고지서는 본교 입시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함(개별통보 및 우편 발송 없음)
합격자등록	2024.02.07.(수) ~ 02.13.(화)	▸ 신한은행 전국지점

※ 모든 일정(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등)은 개인별 통지, 발송하지 않음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주/야	입학정원	정원 외 특별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북한이탈주민
간호보건	간호학과(4년)		주	19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치위생과(3년)		주	139			
	치위생과(3년)		야	30			
	보건행정과(3년)		주	40			
	물리치료과(3년)		주	30			
휴먼케어	반려동물과(2년)		주	25	2		
	운동건강관리과(2년)		주	61	1		
IT·방송	방송콘텐츠과(2년)		주	35	2		
	연기영상과(3년)		주	40			
	실용음악과(2년)	보컬	주	60			
		기악(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 관현악)					
		작곡					
		싱어송라이터					
		미디작곡/음향					
		소계					
교육·복지	유아교육과(3년)		주	64			
	사회복지과 (3년)		주	60	1		
	세무회계과(2년)		주	36	1		
헬스&푸드아트	식품영양과(3년)		주	40	1		
	호텔외식조리과(2년)		주	60	1		
	제과제빵과(2년)		주	80	1		
예술디자인	미용예술과(2년)	메이크업미용전공	주	40	1		
		피부미용전공	주	35	1		
		헤어미용전공	주	37	1		
	패션디자인과(3년)		주	40	1		
	패션마케팅과(2년)		주	35	1		
	시각디자인과(3년)	그래픽디자인전공	주	40	1		
		미디어디자인전공	주	40	1		
합계				**1,258**	**17**		

III. 전형료(공통) : 40,000원(외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IV. 지원자격별 전형안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본인 외국학교 재학기간 및 부모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6호, 7호 대상자 제외)

구 분	외국학교 재학기간	부모 자격요건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파견자 또는 해외근무자*			기타 재외국민	
		해외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교과정 1개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통산 3년 이상(비연속 인정) 외국에서 수학 및 체류	3년 이상	3년 이상 (고교과정 1개년 포함)	2년 이상 (고교과정 1개년 포함)	부모 모두 3년 이상 (고교과정 1개년 포함)	부모 모두 2년 이상 (고교과정 1개년 포함)

※ 지원자와 부모 해외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인사발령일 기준), 재학기간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학생의 경우 이수 기간의 3/4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 학년도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 기간계산 기준 : 역년(曆年_Calendar year)

- 부모 해외근무 및 거주와 체류기간은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파견자의 범위 : 해외근무파견자는 배우자가 외국에서 동반 체류할 의무는 없으며, 유학·교육·연수·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됨

① 외국근무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외국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④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2. 전형요소 및 평가

면접(100%) : 학업능력, 지원동기와 학업계획, 인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참고)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등

1.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및「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으로써 다음의 어학능력 자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② 한국어로 진행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2. 전형요소 및 평가

면접(100%) : 학업능력, 지원동기와 학업계획, 인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참고)

북한이탈주민 등

1.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인 자

2. 전형요소 및 평가

면접(100%) : 학업능력, 지원동기와 학업계획, 인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참고)

V. 지원 자격 심사기준

외국학교 인정기준

⑴ 외국학교라 함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⑵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한 경우만을 인정하며, 그 외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학기간 인정기준

⑴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Daycare center,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을 인정하며, 국내·외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 학년 또는 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 미인정)

초	중	고
1 ~ 6학년	7 ~ 9학년	10 ~ 12(13)학년

※ 한국학제 해당 외국학교 초.중.고교 기준표

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학제 차이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⑵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⑶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Ⅵ.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지원자격별 제출구분			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등	
1	입학원서	○	○	○	· 본교 소정양식 (인터넷접수)
2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	○	○	· 본교 소정양식 (인터넷접수)
3	학력조회의뢰서	○		○	· 본교 소정양식 (인터넷접수) · *지원자 기재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
4	초·중·고교 전 학년 졸업(예정)증명서	○		○	· 해당 학교 날인 필수 · 지원자의 해당 학교 재학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초·중·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	
6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7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	·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제출 · 해외파견근무자의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와 지원자만 제출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지원자만 제출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	· 본교 소정양식 (인터넷접수)
9	여권 사본(부모,학생)	○			
10	신분증 사본			○	
11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학생)	○			·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제출 · 해외파견근무자의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와 지원자만 제출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지원자만 제출
12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 (해당 사항 서류로 제출)			· 해당 해외 파견재직자 및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인 부모 중 서류제출
13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14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				
15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제출)				
16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주소지 시 · 군 · 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
17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8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택1)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해당
	학력확인서 및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 고등학교 졸업자 해당 · 시 · 도 교육청에서 발급받아 제출
19	어학능력 입증서류			○(택1)	·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제출 · 한국어로 진행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증빙자료 제출

Ⅶ.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1)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했어도 제출 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조건 확인을 위해 본 대학이 추가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3) 원서접수 시 연락이 가능한 주소, 본인 및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추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입력사항 착오,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동일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하며, 정시모집의 타 전형과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1)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발행기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기간에 본교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국문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학교 서류에 대한 확인서 제출안내

⑴ 대상 : 원서접수 시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등) 제출 대상자

⑵ 제출방법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해당 학교 소재국 정부 지정기관에서 발급),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영사확인서(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 중 택 1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영사확인서(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 중 택 1

⑶ 아포스티유 협약국

지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124개 국가명 (2023.03.23. 기준)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1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52개국)**
북미	미국 **(1개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31개국)**
중동·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19개국)**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홈페이지 참고(LINK)

4. 기타 유의사항

⑴ 입학전형 평가내용과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동점자 처리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릅니다.

⑵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더라도, 본교가 적절한 학력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⑶ 지원 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⑷ **2024학년도 입시종료일인 2024.02.29.(목)까지 관계기관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등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⑸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또한,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도 입학이 취소됩니다.

⑹ 합격자가 본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또는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교육부령)'에 의거하여 환불합니다.

⑺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1조 2항(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등)에 따라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⑻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